

감사원

주 의 요 구

제 목 승마국가대표 훈련 관리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대한체육회

조 치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내 용

1. 활동 및 출전기록이 없는 국가대표 선수(정유라)의 국가대표 자격 적정성 여부

승마국가대표선수는 대한승마협회의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 제17조 제4호에 따라 전년도 대한승마협회가 주최한 전국대회 및 국제승마협회가 주최한 국제승마대회의 순위를 통합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포인트로 환산하여 각 종목별 통합순위를 산정한 후 통합순위가 높은 선수를 경기력향상위원회에 부의하여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 심의한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선발되는데, 정유라(개명전 정유연, 이하 “정유라”라 한다)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15. 2. 24. 2015년도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한편,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 제5조에는 국가대표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표 12]와 같이 8개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대표 자격 유지 기간은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 제14조에 따라 1년으로 정해져 있다.¹⁾

1) EY는 2015년 12월(날짜 모름) AY와 함께 □□ 대표이사 FB를 1차로 면담하였고, 2016년 1월(날짜 모름) FA와 함

[표 12] 승마 국가대표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자료: 대한승마협회 제출자료

이와 같이 2015년도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활동기록이나 출전기록이 없다²⁾는 사유는 국가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유라가 2015년도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1년간 국가대표자격을 유지하였던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2. 국가대표 훈련 관리의 적정성 여부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1조 등에 따라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 중인 선수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중앙경기단체가 제출한 촌외훈련계획서에 따라 급식비 등 훈련보조금을 지급한 후 훈련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지급한 보조금의 정산을 승인하고 있으며, 훈련계획 이행 여부를

2) 본부장 FC를 2차로 면담하여 국가브랜드 사업 내용 및 추진경과 설명

2) 참석시키도록 하였으며, Z가 같은 해 2월경 AB에게 아프리카 3개국 문화행사도 플레이그라운드가 대행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음(AF는 AB에게 플레이그라운드로 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AB와 진술 상충)

확인하는 등 촌외훈련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24조에 따르면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 중인 선수에 대한 수당은 매월 훈련참가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31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르면 촌외훈련을 실시한 중앙경기단체의 장은 사업종료 14일 이내에 훈련기간, 장소, 훈련방법, 일자별 훈련참가 현황 등을 대한체육회에 보고하고,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정산 및 촌외훈련 실시결과 보고를 지연할 경우 대한체육회는 국고보조금 보조를 중지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촌외훈련을 실시한 중앙경기단체의 장이 제출한 촌외훈련 결과보고서에 훈련장소, 일자별 훈련참가 현황 등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훈련결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면 훈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선수수당 및 급식비 등 훈련보조비가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한 후 정산승인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월 감사기간 (2017. 1. 19.~3. 10.) 동안 대한체육회가 대한승마협회에 지급한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보조금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1) 정산서 및 훈련결과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관리 미흡

대한승마협회는 2014~2015년 사이 선수들의 월별 촌외훈련을 마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서와 훈련결과보고서를 [별표 4] “대한승마협회 정산서 등 제출일”과 같이 길게는 243일까지 지연하여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정산서 등의 제출을 독촉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중지 또는 환수하는 등 자연 제출에 따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촌외훈련 관련 선수수당 및 급식비 등 지급 정산 부적정

대한체육회는 2014~2015년 사이 [별표 5] “승마 국가대표 선수수당 및 급식비 등 지급액”과 같이 승마 국가대표 선수의 촌외훈련 관련 선수수당 및 급식비 등을 지급하고 정산하였다.

그런데 2014년의 경우 승마 국가대표 선수수당 및 급식비 지급 근거로 대한승마 협회가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월별 촌외훈련결과보고서에는 선수들의 훈련장소가 ‘촌외 개인별 소속훈련’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훈련장소를 알 수 없게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2015년 9월의 경우 장애물 종목의 훈련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월별 일일훈련일지의 경우 정유라의 2014년도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았고, 자필서명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어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운 등 [표 13]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다.

[표 13] 승마 국가대표 훈련일지에 나타난 문제점

문제점	선수	내용	비고
서명 불일치	정유라	- 2014년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서명 불일치 - 2015년 10~12월 서명 불일치	
서명이 아닌 도장 날인	정유라	- 2014년 3~12월	- 3~6월, 12월분 도장 모양과 7~10월 분 도장 모양이 다름 - 2015년 3~9월 선수수당 미수령
	BF	- 2014년 7~12월 - 2015년 10~12월	- 2014년 3~6월 선수수당 미수령 - 2015년 3~9월 선수수당 미수령
서명 없음	정유라	- 2014년 5월 5주차	

문제점	선수	내용	비고
	BG	- 2015년 9~11월	
훈련일지 미제출	BG	- 2015년 12월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14년 9월의 경우 마장마술 선수에게 28일분 선수수당(1일당 5만 원)이 지급되었고, 장애물종목 선수에게는 27일분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훈련일지에는 [표 14]와 같이 마장마술 선수가 25~26일, 장애물종목 선수가 26일을 훈련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표 14] 2014년 9월 승마 국가대표 훈련일지상 훈련일수

(단위: 일)

구분	선수	수당지급일수	훈련일지상 훈련일수
마장마술	정유라	28	25
	BH	28	25
	BI	28	25
	BF	28	26
장애물	BJ	27	26
	BK	27	26
	BL	27	26
	BG	27	26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정유라의 2015년 10~12월 촌외훈련결과보고서의 경우 해외훈련장사용 확인서의 서명 일자가 [표 15]와 같이 훈련기간 중으로 되어 있어 사용기간 모두 실제 승마장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표 15] 정유라 선수의 2015년 10~12월 해외훈련장 사용확인 서명 일자

해외 승마장 사용기간	사용확인 서명(일자)
2015. 10. 1.~10. 31.	2015. 10. 14.
2015. 11. 1.~11. 30.	2015. 11. 9.
2015. 12. 1.~12. 31.	2015. 12. 11.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2014~2015년 사이 대한승마협회의 촌외훈련결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제출되었는데도 대한체육회 □부 주무 BM(2014년 1월~2015년 4월)과 BN(2015년 5월~2016년 6월 퇴사)은 촌외훈련결과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산 승인에 대한 기안을 하였고, (2014년 1월~2015년 1월)와 BP(2015. 1. 15.~ 2016년 3월 현재)는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정산을 승인하는 등 국가대표 승마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3. 국가대표훈련보고서 훈련일지의 허위, 위조 제출 여부

위 “2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유라의 2014년도 훈련일지가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제출되어 훈련 미실시 및 훈련일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정유라가 훈련하였다는 승마장의 경우 훈련 일지나 마방 일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으며³⁾,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관계기관 의견 대한체육회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승마종목 등 상시 촌외훈련 종목의 경우 직접적인 점검이 어렵고 문서에 의존해 그 훈련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향후 촌외훈련 종목에 대한 점검활동을 확대하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고·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3)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2016년 11월 실시한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통해서도 이같이 확인되었음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장은

- ① 앞으로 국가대표 촌외훈련에 대한 관리·감독과 촌외훈련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4]

대한승마협회 정산서 등 제출일

월별	총외훈련계획서 제출일 (보조금 교부일)	정산서 제출기한 ¹⁾	정산서/훈련결과보고서 제출일 (정산승인일)	정산서 제출지연 일수
2014. 3.	2014. 2. 24. (2014. 3. 3.)	2014. 4. 14.	2014. 11. 4. (2014. 11. 11.)	208일
2014. 4.	2014. 3. 25. (2014. 3. 31, 2014. 4. 25.)	2014. 5. 14.		179일
2014. 5.	2014. 4. 24. (2014. 4. 30.)	2014. 6. 14.		143일
2014. 6.	2014. 5. 23. (2014. 5. 30.)	2014. 7. 14.		115일
2014. 7.	2014. 6. 26. (2014. 6. 30.)	2014. 8. 14.		84일
2014. 8.	2014. 7. 30. (2014. 7. 30.)	2014. 9. 14.		53일
2014. 9.	2014. 8. 29. (2014. 9. 11, 2014. 9. 17.)	2014. 10. 14.	2014. 11. 10. (2014. 11. 11.)	27일
2014. 10.	2014. 9. 26. (2014. 9. 30.)	2014. 11. 14.	2014. 11. 25. (2014. 11. 27.)	12일
2014. 12.	2014. 11. 25. (2014. 11. 28.)	2015. 1. 14.	2014. 12. 29. (2015. 1. 13.)	–
2015. 3.	2015. 2. 25. (2015. 2. 27.)	2015. 4. 14.	2015. 4. 16. (2016. 6. 20.)	6일
2015. 4.	2015. 3. 26, 2015. 3. 30. (2015. 3. 31.)	2015. 5. 14.	2015. 5. 15. (2016. 6. 20.)	1일
2015. 5.	2015. 4. 16. (2015. 5. 1.)	2015. 6. 14.	2015. 6. 10. (2016. 6. 20.)	–
2015. 6.	2015. 5. 20. (2015. 6. 17.)	2015. 7. 14.	2015. 7. 15. (2016. 6. 20.)	1일
2015. 7.	2015. 6. 22, 2015. 6. 23. (2015. 6. 30.)	2015. 8. 14.	2015. 8. 13. (2016. 6. 20.)	–
2015. 8.	2015. 7. 20, 2015. 7. 21. (2015. 7. 31.)	2015. 9. 14.	2015. 9. 18. (2016. 6. 20.)	4일
2015. 9.	2015. 8. 17, 2015. 8. 19. (2015. 8. 31.)	2015. 10. 14.	2016. 6. 13. (2016. 6. 20.)	243일
2015. 10.	2015. 9. 18. ²⁾ (2015. 10. 15.)	2015. 11. 14.		212일
2015. 11.		2015. 12. 14.		182일
2015. 12.		2016. 1. 14.		152일

주: 1. 촌외훈련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2. 교부방식 변경으로 4분기 일괄교부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5]

승마 국가대표 선수수당 및 급식비 등 지급액

(단위: 원)

구분	선수수당	급식비 등	비고
2014년	3월	8,000,000	5,600,000
	4월	11,000,000	7,700,000
	5월	11,000,000	7,700,000
	6월	11,000,000	7,700,000
	7월	15,000,000	10,360,000
	8월	15,000,000	10,500,000
	9월	17,000,000	6,881,460
	10월	11,050,000	7,735,000
	12월	14,350,000	4,668,150
	계	113,400,000	68,844,610
2015년	3월	5,880,000	986,880
	4월	7,140,000	947,080
	5월	8,400,000	1,009,300
	6월	10,080,000	2,794,200
	7월	11,200,000	3,156,700
	8월	12,660,000	4,019,920
	9월	13,200,000	3,119,950
	10월	15,900,000	2,387,360
	11월	16,020,000	4,808,610
	12월	17,700,000	5,465,980
계		118,180,000	28,695,980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